학칙 시행 세칙(Ⅱ)

[제정 2007.1.16., 일부개정 2021.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 세칙(Ⅱ)은 학칙 제67조에 따라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공 선택 및 배정

- 제2조(적용범위) ① 학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학부제 운영 학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순수정원 외의 대상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중 각 학부에서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6.17>
 - ② 학부 소속의 모든 학생은 필히 1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제3조(전공신청) ① 전공신청은 2학기말 이전 지정된 기간에 소속 학부장 및 학장의 예비승인을 얻어 전공배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총장의 허가에 의해 2학년 1학기 진입시 전공을 배정 받는다.
- 제4조(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영역의 지망자가 편중될 경우 학생의 적성, 성적 및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각 학부의 전공배정 허용인원은 입학 학년도의 편제정원을 기준하여 전공배정 대상학생의 비율로 조정한 정원(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 재학생)의 최소 70%~최대 1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9.10, 2011.8.24>
 - ③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전공배정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④ 전공배정 대상자가 지정기간 내에 전공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부장은 전공

별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임의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전공변경) ① 이수중인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초 전공배정으로부터 한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에 해당하며 소정기간에 학부장 및 학장의 예비승인을 얻어 전공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공변경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② 전공변경의 허용범위는 전공변경 신청자의 편제학년에 적용된 전공별 허용인원의 범위내로 한다.
 - ③ 삭제<2015.1.7.>

제3장 교내 전부(과)

- 제6조(허용범위)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과)의 허용범위는 사범계학과를 포함한 전체 학부(과)로 한다. 단,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자연과학대학 간호학 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31, 2011.1.26, 2011.8.24., 2012.11.7., 2020.1.16.>
- 제7조(전·출입 허용인원) ① 학부(과)별 전·출입 허용인원은 2, 3학년 재학 중 학부(과)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학과로의 전입허용인원은 편입, 재입학, 정원외 입학, 전부(과) 등을 합하여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09.11.11., 2011.8.24., 2019.6.26.>
 - ② 삭제<2011.8.24>
 - ③ 삭제<2009.1.29>
 - ④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폐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8.24>
- 제8조(시기 및 제한) ① 전부(과) 희망자는 제3학기에서 제6학기 학기 시작 전·후 소정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6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24., 2013.2.19., 2013.12.11., 2018.11.14., 2019.6.26.>
 - ② 전부(과)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모집단위의 폐지에 의한 경우는 전부(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24., 2013.2.19., 2019.6.26.>

- ③ 삭제 <2018.11.14.>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폐지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14.>
- 제9조(제출서류) 전부(과)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부(과) 지원서 1부.
 - 2. 소속 학부(과)장의 의견서 1부. 단, 소속 학부(과)장의 의견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교무처장의 확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전 학년 성적확인자료 1부.
- 제10조(사정원칙) ① 전·출입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전부(과)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높은 자 및 전부(과) 희망학부(과)의 전공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② 각 학부(과)의 요구에 의해 시험(필기 또는 면접) 또는 실기테스트(예능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과정 이수) ①전부(과)한 자의교육과정은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당해 학과(부)의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2015.1.7., 2018.6.20.>
 - ② 전부(과)한 시점 이전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면제 한다.<신설 2008.9.10.> <개정 2009.2.19., 2011.12.12., 2012.11.7., 2013.2.19., 2015.1.7., 2018.6.20.>
 - ③ 교양필수, 교양필수선택 과목의 이수여부는 전부(과) 시행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8.9.10)
- **제12조(등록금 정산)** ① 전부(과) 확정자의 수강신청 변경과 계열 변동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정산한다.<개정 2008.9.10>
 - ② 수업일수 1/2까지 등록금 차액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전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9.10>

제4장 다전공 및 부전공 <개정 2011.12.12., 2013.5.8>

- 제13조(허용범위) 다전공 및 부전공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31, 2009.6.17, 2011.1.26., 2011.12.12., 2013.5.8>
 - 1. 모든 학부(과)의 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3전공 초과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 2.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자격 취득과 무관한 경우는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2.11.7., 2013.5.8>
 - 3.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의 다전공 및 부전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의 디자인컴퓨테이션AI융합전공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7.6., 2008. 1. 31, 2010.1.27, 2010.10.13, 2011.1.26, 2011.8.24., 2012.11.7., 2013. 5.8., 2020.1.16., 2020.5.13., 2021.1.13.>
 - 4. 삭제<2015.1.7.>
- 제13조의2(다전공 개설 및 폐지) ①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신설 신청서를 주시경교양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융복합전공위원회,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신설 2019.2.15.>
 - ②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폐지 또는 존속 여부는 학사제도연구위원회에서 이수실적을 평가 심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9.2.15.>
 - ③ 설치·운영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별지 5]와 같다. <신설 2014. 2.4., 2015.12.16., 2019.2.15., 2020.8.20.>
- 제14조(신청 자격 및 제한) ① 제1전공 학부(과)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인의 제1전 공이 확정된 자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한 자로 한다.
 - ②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자는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9.1.29., 2013.5.8., 2019.2.15., 2020.8.20.>
 - ③ 제3전공 신청 자격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제2전공의 전공과목을 9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 한다.

- ④ 제1전공 계열과 다른 계열 학부(과)의 전공을 지원할 경우 학생의 적성과 이수능력 및 지원 학부(과)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⑤ 다전공 및 부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다. 단, 다전공 및 부전공을 취소하거나학기연장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당해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 제15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신청 시기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단, 신청학기를 기준으로 9학기 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5.8., 2018.2.21., 2020.8.20.>
 - ② 신청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고,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단, 다전공 교직과정이수자는 각 해당 전공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2013.5.8.. 2018.2.21>
- 제16조(교육과정 적용)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육과정은 제1전공과 같은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허락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이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5.8>
- 제17조(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은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10.1.27, 2011.12.12, 2013.5.8, 2014.2.4>
 - ② <삭제 2010.10.13.>
 - ③ 다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제18조(연계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개정 2014.2.4.>

- 1. 삭제 <2014.2.4.>
- 2. 삭제 <2014.2.4.>

- ① 교육과정상의 편성학점은 연계전공 이수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50학점 이상을 편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4.>
- ② 교양교과목도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4.>
- ③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영역별 최소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분야별로 골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4.2.4.>
- ④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융복합전공위원회와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4.2.4., 2018.2.21., 2019.2.15.>

제18조의2(연계 및 융합전공운영) <개정 2014.2.4.>

- ① 연계 및 융합전공교육의 교육과정편성을 위하여 주시경교양대학 내 융복합전공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장은 주시경교양대학장으로 한다.<개정 2014.2.4.,2015. 6.10., 2021.1.13.>
- ② 연계 및 융합전공의 운영 및 관리는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에서 한다.<개 정 2014.2.4., 2019.2.15., 2019.3.1.>
- ③ 융합전공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2.15., 2021. 1.13.> [본조신설 2011.12.12]
- 제19조(부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부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4.2.4., 2021.13.13.>
 - ② 부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8.11.14.>
- 제20조(이수과목 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 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 ②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이전에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3.5.8>
 - ③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없다.<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 ④ 제 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8.> <개정 2013.8.22., 2014.2.4., 2021.1.13.>
- ⑤ 삭제 <2014.2.4.>
- 제21조(실험실습비) 다전공 및 부전공에서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 제22조(부전공 자격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전환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수요건은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2.21.>
- **제23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적용)** 교직과정 이수자의 다전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13.5.8.>
 - 1. 사범계열 학부(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교직과정 이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주 전공(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과목 50학점 이상, 다전공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 29, 2013.5.8>
 - 2. 다전공은 사범계열 학부(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1.29., 2009.6.17., 2013.5.8>
 - 3. 삭제<2009.1.29>
 - 4. 자격종별이 다른 다전공의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09.1.29., 2013.5.8>
 - 5.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에 사범계열 학부(과)는 학년도의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 학년도의 학부(과)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1.29. 2020.1.16.>

제5장 교직과정

- 제24조(목적) 학칙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의 이수와 자격취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5조(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 등은 [별지 1]과 같다. <2015.12.16.>
- **제26조(지원 자격 및 방법)** 교직과정이수자의 지원 자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개정 2009.6.17, 2010.6.16>
 - 1. 지원자격
 - 가. 교직과정이 개설, 인가된 학부(과)의 2학년 재학생 중 3학기 이수자<개정 2009.6.17, 2010.6.16>
 - 나. 3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개정 2010.6.16., 2018.2.21>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개정 2010.1.27>
 - 2. 지원방법 및 선발방법: 2학년 1학기 수업 종료 전 지정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개정 2009.6.17., 2010.6.16., 2013.5.8.>
 - 3. 해당 학부(과)의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신설 2021.1.13.>
 -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자
 - 나.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다. 전공과목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라. 면접 평가 점수가 높은 자
 - 4.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은 취소 처리한다. <신설 2021.1.13.>
 - 가. 학칙 제20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 나. 학칙 제40조에 따라 퇴학하는 경우
 - 다.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 라. 교직 이수 학생이 전과한 경우 원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하는 경우(교육 과 포함)
- 5.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부(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 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13.>
- 제27조 (교직과정 교과목) ①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정 교과목은 [별지 2]와 같으며, 영역별 필수여부 및 본인의 학년에 맞는 수강과목을 결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직과목이 설치된 학부(과)의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지 3]과 같으며, 해당 표시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이수하여야 한다.
- **제28조 (교직과목 이수학점)** 제27조의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별지4]와 같다.<개정 2009.1.29., 2013.5.8>
- 제29조(교원자격증 신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 등학교 정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졸업학기 소정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10.1.27., 2015.1.7>
 - 1. 삭제<2015.1.7.>
 - 2. 삭제<2015.1.7.>
- **제30조(무시험 검정기준)**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의 무시험 자격검정은 [별지4]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5.8>
- 제31조(학교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하는 학교 급에서 소정기간에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31조의2(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31., 2013.5.8>

- ② 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5.8.>
-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5.8.>
- ④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5.8.>

[본조신설 2007.7.6]

- 제31조의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수강 신청 후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전에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2021.1.13.>
 - 2.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봉사활동 후 각 학교(기관)장의 확인을 득한 교육봉사기간을 누적 인정하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여야 한다.
 - 3. 교육봉사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해당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21.1.13.>

[본조신설 2010.6.16.]

제31조의4(학교현장실습 실습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 의거 학교 현장실습 소요경비를 해당 학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

제6장 계절학기

- 제32조(계절학기 운영) 학칙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계절학기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33조(수업시간)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

- 을 원칙으로 한다.
- 제34조(수강신청학점) ①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7.6>
- ②장기현장실습(IPP),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7., 개정 2017.9.13., 개정 2017.11.8〉
- 제35조(수강인원)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 학점 미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목, 학칙시행세칙 (I) 제22조의 현장실습 교과목 및 제23조의 단기해외연수, IPP, LINC+ 계절학기 교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9.7., 2017.9.13>
- 제36조(성적결과조치)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시 졸업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정리함으로 정규학기 이수교과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한다.
 -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 제37조(등록) ① 계절학기 등록시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료는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해외연수관련 교과목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2.4., 2019.2.15.>
 - ② 수업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개강 전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2.15.>
- 제38조(시행공고) 계절학기 시작 20일 전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교과목, 수업시간, 수업 료 등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 제39조(세부사항) 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시간제 등록학생

- 제40조(목적) 학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 학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1조(등록자격) 시간제등록 학생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한다.
- 제42조(등록인원)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예체능계와 사범계학부(과)는 제외한다.
- 제43조(지원절차) 본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전형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 4. 기타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4조(선발방법) ①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은 출신 고등학교의 성적 또는 면접고사로 선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하였던 자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시간제등록을 원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제45조(전형시기)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은 매 학기별로 하되 지원자에 대한 전형 시기 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6조(수강학점) 시간제등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7조(등록금)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총장이 정하는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8조(교과와 수업) 시간제등록 학생의 교과와 수업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9조(학위수여) ①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칙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학사학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학적관리) 시간제등록 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관리한다.
- 제51조(학년배정) 시간제등록 학생에게는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제 증명 발급) 시간제등록 학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증, 등록확인 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3조(학칙준수 의무)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본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삭제<2010.10.13>

제54조 삭제<2010.10.13>

제55조 삭제<2010.10.13>

제56조 삭제<2010.10.13>

제57조 삭제<2010.10.13>

제58조 삭제<2010.10.13>

제59조 삭제<2010.10.13>

제60조 삭제<2010.10.13>

제61조 삭제<2010.10.13>

제62조 삭제<2010.10.13>

제9장 보칙

제63조(준용) 이 학칙시행세칙(Ⅱ)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본 제정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Ⅱ)의 제정에 따라 본 학칙시행세칙(Ⅱ) 시행일로 부터 교직과정 운영규정, 복수전공 운영 규정, 부전공 시행규정, 전공 선택 및 배정에 관한 규정, 전부(과)제도 운영 규정 및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단, 2007년 1월 16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7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8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조치) 제8장 제54조~제62조의 적용은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2008. 3. 1일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2010.
- 3. 1일 이후 편입하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8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3조 4호(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 면제)의 적용은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단, 제11조 제2항, 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호, 제4

- 호, 제5호,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30조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생부터 한다.
-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 3월 1일 이후 공학교육인 증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부(과) 1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 2. (경과조치) 제13조 제4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한다.
- 3. (경과조치) 제23조 제2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Ⅱ) 제13조, 제17조의 적용은 2008학년도 이 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 그램에 참여 하는 자부터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4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3항, 제13조 제3호, 제4호의 단과대학명 및 아펜젤러국제학부 폐지의 적용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제13조 4호중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학생의 복수(부)전공 허용은 2012학년 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7조, 제18조는 2014년 이후 다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II)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의2(연계 및 융합전공운영) 제2항의 명칭변경(융복합교육센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6.> (배재대학교 학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대학, 김소월대학 재적생은 2020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제에 따라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AI·SW창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6.>
 - ②~③ <생략>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3조2의 별지5 개설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별지1], [별지3], [별지5],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 시행 이전의 학생들도 변경된 융합전공명칭을 적용한다.

[별지 1]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개정 2008.1.31., 2009. 1.29, 2010.1.27, 2010.10.13, 2011.12.12., 2012.11.7., 2013. 12.11.,2015.12.16., 2018.2.21., 2019.6.26., 2020.1. 16., 2021.1.13.>

		선발인원					
학부(과) 및	표시과목	2021 학년도	2020 학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비고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종교	2	2	2	2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국어	3	3	4	4	
중국학과		중국어	4	4	4	4	
일본학과		일본어	_	-	3	3	2020학년도 폐지
	영어영문학	영어	2	2	3	4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러시아어	_	1	2	2	2021학년도 폐지
글도밀외국어사율선중약주 	TESOL·비즈니스영어학	영어	2	2	2	2	
	스페인어・중남미학	스페인어	2	2	2	2	
심리상담학과	-	3	3	3	3		
경영학과	상업	_	8	8	8	2021학년도 폐지	
조경학과	식물자원· <i>조</i> 경	2	2	2	2		
아트앤웹툰학과	미술	5	5	5	5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음악	3	3	3	3	
중 한 예 풀 씩 구	클래식피아노	음악	2	2	2	2	

[별지 2]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정 교과목<개정 2009.1.29., 2013.5.8., 2014.8.27., 2018.2.21>

		이 수 학 점			
영 역	과 목	2009~2012	2013학년도		
		학년도 입학자	이후 입학자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그 기 시 교	교육평가	1 4 की जी	12학점		
교 직 이 론	교육방법및교육공학	14 학점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 직 소 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4 학점	6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4 학점	4학점		
平 4 5 月	교육봉사활동	4 当省	4号省 		

[별지 3] 교직과목이 설치된 학부(과)의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개정 2009. 1.29, 2010.1.27., 2010.10.13., 2013.12.11., 2018.2.21., 2019.6.26., 2021.1.13.>

학부(과) 및	전공 명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종교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 사, 종교와문화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국어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 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중국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 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 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학과		일본어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 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 본문화	
	영어영문학	영어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	
그 그 씨시그 사 씨 아 씨 그 전 년	TESOL • 비즈니스영어학		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스페인어・중남미학	스페인어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 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강 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러시아・중앙아시아학	러시아어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 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심리상담학과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 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가정교육과		가정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학부(과) 및 전공 명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경영학과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자원관리론(ERP)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 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조경학과		식물자원 · 조경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아트앤웹툰학과		미술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 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	
- 중천에골약구 -	클래식피아노] 급격	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 아노반주법	

[별지 4] 교직과목 이수학점 및 주전공 무시험 검정기준 <신설 2013.5.8., 개정 2019.6.26.>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 : 신입학 한 학년
- 편입학, 재입학, 전과 :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학 년도를 편입학, 재입학, 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교직과정 이수자 : 신입학학 학년도와 상관없이"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 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전공이수자 : 다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 기준을 적용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교직과정이수자 선발이후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신설 2019.6.26.>

[별지 5] 개설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신설 2014.2.4.,2015.6.10.,2015.12.16., 2016.9.7., 2018.2.21., 2018.6.20., 2021.1.13.>

1. 연계전공

연계전공명	참여학과	비고
식품영양학	가정교육과, 외식경영학과,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스포츠마케팅학	레저스포츠학과, 경영학과	
중국통상학	중국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스페인·중남미통상학	스페인·중남미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상담복지학	심리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교직부	
노인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실버보건학과	
유아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유아교육과	
공항관리학	항공운항과, 일본학과	
기능성화장품/소재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제약공학	

2. 융합전공

융합전공명	비고
벤처창업학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과학기술・행정융복합	
AI·전기융합	
AI·전자융합	
드론·철도·건설AI융합	
한류콘텐츠SW융합	
디지털커머스AI융합	
AI융합신소재디자인	
스마트농산업AI융합	
호스피탈리티SW융합	
디자인컴퓨테이션AI융합	
실내건축오토메이션AI융합	
패션AI융합	